#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56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유용원・박수영・강선영

임종득 • 조경태 • 이준석

강대식 • 주진우 • 성일종

한기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 용적률 및 건물 층수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일반부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군 주거시설의 안정적인 제공이 필요하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에 따른 고층화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건폐 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군인 주거시설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군부대부지 안에 군인의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조의2(군인 주거시설의 건폐
	율·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군부대부지 안에 군인의 주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시
	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
	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